
바가지요금 근절대책

2026. 2. 25

관 계 부 처 합 동

순 서

I. 추진배경	1
1. 현황	1
2. 문제점	3
II. 추진방향	4
III. 세부 추진과제	5
1. 가격(품질) 투명성 제고	5
2. 합리적 가격형성 환경 조성	7
3. 바가지 근절을 위한 제도적 유인구조 강화	9
4. 민·관 공동참여형 통합관리체계 구축	10
IV. 향후 추진계획	12

I. 추진배경

- ◇ 성수기, 대규모 행사 등 특정기간 **바가지요금** 문제 지속 발생
- ◇ ①**가격(품질) 불투명성**, ②**과도한 요금인상** 등이 주 요인이나, **제재수단 미흡**

1 현황

① (현황) 성수기 등 정보 비대칭성을 악용한 바가지요금 문제 지속 발생

- 최근 글로벌 아이돌 콘서트 관련 숙박업소 가격 폭등* 사례 → 대규모 행사 또는 성수기 기간마다 바가지요금 민원 지속 발생
- * 부산지역 135개 숙소(호텔 52, 모텔 39, 펜션 44개) 실태조사 결과, 6월 공연주간 주말 1박 요금을 직전·직후 주말과 비교시 평균 2.4배, 최대 7.5배에 육박(공정위, 2.13)
- 관광불편 신고센터 신고자 대부분이 외국인 → 관광지 일회성 거래에 따른 정보 비대칭성을 악용, 폭리 취득 행태

【 바가지요금 관련 관광 불편신고 현황('25.11~'26.1)】

불편사항	세부사항	신고접수(건)			전년동기비
		내국인	외국인	합계	
음식점	게시 가격과 상이, 부당요금 등	11	6	17	+14건
택시	부당요금 징수 및 미터기 사용거부	-	45	45	+10건
숙박	아이돌 공연 관련 불편신고(서울, 부산)	44	94	138*	+136건
쇼핑	과다 청구(이중결제, 오결제)	1	12	13	△5건
	계	56	157	213	+155건 (공연 관련 제외시 +17건)

* 138건 중 예약취소 및 위약금 117건, 과다요금 판매지적 등 21건

② (업종) 숙박, 교통, 음식업을 중심으로 한 바가지 사례 다수

- ① (숙박) 가격을 표시하지 않거나, 콘서트 등 수요가 집중되는 지역·시기에 요금을 과도하게 인상하는 사례 존재
- 특히, 가격인상 위해 기존 계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경우가 많으며, 낮은 서비스 품질에 대한 고객 불만도 다수 존재

현장 사례

- ▶ 서울 종로구 모텔 토요일 숙박비 약 14만원 → 아이돌 공연 당일 50만원으로 요금 인상 ('26.1.26 보도, "'모텔급도 1박에 50만원' OOO 컴백 특수, 선 넘은 숙박비')
- ▶ 부산 동래구 숙박업소 평일요금 6.8만원 → 아이돌 공연 당일 76.9만원으로 인상 ('26.1.19 보도, 'OOO 공연 소식에 방값 10배 '바가지' ... 7만원 숙소가 77만원')

- ② (교통) 미터기·플랫폼 등 존재로 택시 바가지요금 가능성은 낮으나, 방한 외국인을 상대로 부당한 요금 받는 사례 존재
 - 렌터카의 경우 제주도 중심으로 성수기 바가지요금 민원 빈발

현장 사례

- ▶ 일반적으로 1.2만원인 명동→홍대 택시요금을 외국인 대상으로 4.5만원 부과 ('25.9.6 보도, "'역대급 나라 망신" ... 외국인 3배 바가지 씌운 택시기사')
- ▶ 제주도 경차 하루 렌트비 평시 2-3만원 → 성수기 20만원 ('25.7.23 보도, '비행기표보다 비싼 제주 렌터카?...대여요금 대폭 손질')

- ③ (음식점) 주로 지역상권 등 노점상의 가격 미표시, 낮은 품질,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비싼가격 요구 등의 사례 빈발

현장 사례

- ▶ 서울 OO시장 8천원 순대 주문 → 상인이 임의로 고기 섞어 1만원 계산 ('25.11.4 유튜브, '이상한 과자가게')
- ▶ 일본인 관광객 5.3만원 치킨 주문 → 55.3만원 청구 ('25.4.14 보도, "'5만원 치킨인데 55만원 결제"...K바가지에 날벼락')

③ (유형) ①가격(품질) 불투명성 및 ②과도한 요금인상 등으로 발생

- 사회통념상 바가지요금을 “일반적인 거래관행, 통상적인 가격 수준을 현저히 초과하는 요금”으로 이해
- ⇒ ①불투명한 가격정보로 인한 정보 비대칭, ②특정시기·지역 內 수요집중 상황에서의 과도한 요금인상 등으로 바가지요금 발생

【 바가지요금 관련 유형 및 문제점 】

유형	사례	업종	문제점
① 가격(품질) 불투명성	가격표시 의무 없는 노점상	음식(지역상권)	가격표시 사각지대 존재, 제재 미흡, 제도적 품질관리 어려움
	가격 미표시 또는 표시가격 위반	숙박, 음식	
	낮은 서비스 품질	숙박, 음식	
② 과도한 요금인상	성수기 과도한 가격 인상	숙박, 교통, 지역축제	합리적 가격설정 기준 부족
	(가격인상 수반) 일방적 예약취소	숙박	

- ◇ ①관광지 일회성 거래의 정보 비대칭성 등 시장경제 질서 저해, ②대규모 행사 등 일시적·국지적 독과점 상황 下 소비자선택권 제한
- ◇ 단기적 폭리행위로 인한 국가이미지 훼손 및 중장기 관광경쟁력 저하
- ➔ 바가지근절 종합대책 마련을 통해 소비자 보호 및 관광경쟁력 제고 추진

2 문제점

1 가격표시·준수 의무 사각지대 존재 및 약한 제재수준

- (사각지대) 노점상 등 현행법상 가격표시 의무*가 부과되지 않거나, 표시가격에 대한 준수 의무가 없는 경우** 존재
 - * 식품위생법상 음식점에 대해 가격표시 및 표시가격 준수 의무 부과
 - ** 농어촌정비법상 농어촌민박사업자는 가격표시 의무는 있으나 표시가격 준수 의무 부과
- (약한 제재수준) 가격 미표시, 부당운임 등 의무위반 1차 적발시 낮은 제재강도* 등으로 자발적 준수 유도에 미흡
 - * 1→2차적발시 제재: (음식) 시정명령→영업정지 7일 (숙박) 경고·개선명령→영업정지 5일 (택시) 경고→자격정지 30일 (농어촌민박) 과태료 20만원→40만원

해외 사례

- ▶ 프랑스는 소비자법에 근거하여 정확한 가격정보제공 의무 위반시 최대 3천유로(개인) / 1.5만유로(법인) 벌금 부과 + 기만적 상행위에 대해 최대 징역 2년의 형사처벌 가능
- ▶ 독일은 가격표시령에 근거하여 가격표시 의무 위반시 최대 25만유로까지 벌금 부과 가능

2 “과도한” 요금인상 방지 기준 및 일방취소 등에 대한 제재규정 부재

- 성수기·대규모 행사시 “과도한” 요금인상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기준 및 법적·행정적 제재 규정 부재
 - 특히, “계약 일방파기 → 가격인상·재판매” 등의 부당행위에 대한 제재규정 및 권리보상 절차도 부재

해외 사례

- ▶ 미국 캘리포니아* 등 일부 주에서는 가격폭등 방지법(Anti-Price Gouging law) 시행중
 - * 비상사태 기간중 불법요금 부과에 대한 금지명령 + 위반건당 최대 2,500불 벌금 청구
 - LA 산불 당시, 가격을 10% 초과 인상한 에어비앤비들에 대해 LA시가 소송 제기(25.7)

3 관리체계 분산 등으로 인해 일원화된 대응·피드백 미흡

- (관리체계 분산) 부처별 담당 영역이 분산*되어 바가지요금 관련 범정부 차원의 정보 공유·피드백 및 일원화된 대응 미흡
 - * (숙박)복지부, 문체부, 농식품부 (교통)국토부 (음식)식약처, 중기부 (점검·제재)지방정부(행안부)
- (신고 활성화 필요) 관광불편 통합신고(1330) 외 지방정부 운영 ‘바가지요금 통합신고창구’(지역번호+120) 마련하였으나, 활성화 필요

II. 추진방향

가격(품질) 불투명성

가격(품질) 투명성 제고

① 가격표시 사각지대 해소

- 외국인 도시민박업 등에 요금게시·준수의무 부과
- 노점실명제 확대 추진
- 가격표시·준수여부 평가 강화

② 부당행위 제재강화 + 품질개선 유도

- 음식·숙박 가격미표시 제재 강화
- 숙박 플랫폼을 통한 품질개선 유도

과도한 요금인상

합리적 가격형성 환경 조성

① 자율신고제 도입 등 적정가격 유도

- 숙박업 자율요금 사전신고제 도입
- 내국인 공유숙박 제도화 추진
- 렌터카 최대할인율 규제

② 부당행위 제재강화

- 숙박업 일방적 예약취소시 제재·배상
- 택시 부당운임 등 제재 강화

바가지 근절을 위한 제도적 유인구조 강화

① 정부지원사업 평가시 바가지 행위에 대한 페널티 강화

② 가격안정 노력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민·관 공동참여형 통합 관리체계 구축

① 쉐주기 범정부 대응체계 강화

② 협회·플랫폼·소비자 등 다양한 민간주체의 자율점검·지도 확대

시장질서 유지 및 소비자보호 + K-관광 경쟁력 제고

Ⅲ. 세부 추진과제

1 가격(품질) 투명성 제고

① 비제도권 업체의 제도권 편입 등을 통한 가격표시 사각지대 해소

【 숙박 】

- (사각지대 해소) 외국인도시민박업, 농어촌민박업 등 요금표 게시·준수의무 규정 미비 업종에 대해 의무 부과 신설

- ▶ (외국인도시민박) 가격게시준수 의무 부재 → 가격게시준수 의무 규정 신설(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
- ▶ (농어촌민박) 가격게시 의무만 존재 → 게시요금 준수 의무 규정 신설(도농교류법 개정)

- (모니터링 강화) 대규모 이벤트 발생시 해당지역 숙박요금 변동, 불공정 거래조건 여부 등을 신속 모니터링하여 공개

* 아이돌 공연 기간중(6월) 부산지역 135개 숙소의 숙박요금 실태 조사·공개(공정위, 2.13)

【 지역상권 】

- ① (사각지대 해소) 노점실명제 도입 등 노점상 가격표시 의무 확산을 위한 우수사례 발굴 및 지방정부 배포('26.1/4)

- ▶ (서울 종로구) 노점 대상으로 도로점용허가 기반 노점 영업권 부여(노점실명제) 추진중('25.11~) → 위생·시설기준·교육·이행·가격표시 등 규정화, 미준수시 영업정지 등 조치 추진
- ▶ (서울 중구) 무질서한 노점 난립 방지를 위해 명동일대 노점들에 대해 노점실명제 도입('16) → 거리가게 운영규정 개정을 통해 노점들에 대해 가격표시 의무 부과('24)

- ② (가격표시 강화) 시장지원사업 선정시 가격표시·준수 여부 평가를 강화*하고, 외국인 위한 QR코드 다국어 메뉴 제작 지원**

* (현행) 문화관광형시장 사업 선정시 가격원산지 표시 위생 등 10점 → (개선) 가격표시 여부 단독 배점

** 문화관광형시장 대상으로 시장·점포 상황 고려하여 QR 제작 지원 예정('26)

- ③ (가격정보 제공) 문화관광축제(65개)를 대상으로 가격, 중량 등 먹거리 정보를 사전공개(먹거리 알리오)

② 가격 미표시 등 행위 적발시 법적제재 강화 + 품질개선 유도

- (제재 강화) 가격 미표시 및 허위표시, 표시요금 미준수 등 바가지요금 행위 적발시 즉시 영업정지 가능토록 법적제재 강화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도농교류법 시행규칙,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

【 바가지요금 법적제재 강화(안) 】

품목	위반사항(법령)	위반시 조치사항	
		현행	개선(안)
음식	요금표 게시준수 위반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1차) 시정명령 2차) 영업정지 7일 3차) 영업정지 15일	1차) 영업정지 5일 2차) 영업정지 10일 3차) 영업정지 20일
숙박	숙박업 요금표 게시준수 위반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1차) 경고 또는 개선명령 2차) 영업정지 5일 3차) 영업정지 10일 4차) 영업장 폐쇄명령	1차) 영업정지 5일 2차) 영업정지 10일 3차) 영업정지 20일 4차) 영업장 폐쇄명령
	농어촌 민박업 (현행) 요금표 게시 위반시 (개선) 요금표 게시준수 위반시 (도농교류법, 동법 시행규칙)	과태료 규정만 존재	1차) 영업정지 5일 2차) 영업정지 10일 3차) 영업정지 20일 4차) 사업등록 취소
	한옥 체험업 요금표 게시준수 위반시 (관광진흥법 시행령)	1차) 시정명령 2차) 영업정지 15일 3차) 영업정지 1개월 4차) 사업등록 취소	1차) 영업정지 5일 2차) 영업정지 15일 3차) 영업정지 1개월 4차) 사업등록 취소
	외국인 도시 민박업 요금표 게시준수 위반시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재규정 부재	1차) 영업정지 5일 2차) 영업정지 15일 3차) 영업정지 1개월 4차) 사업등록 취소

* 현재 음식업, 숙박업은 과징금과태료, 농어촌민박은 과태료, 한옥체험업은 과징금 부과가능 규정 존재

- (품질개선 유도) 숙박 플랫폼 등 사용자 후기 기능을 강화*하여, 소비자 평가에 기반한 자율적 품질개선 유도(정부-플랫폼업체 MOU 추진)

* (예) 가격서비스 등 정보공개 강화를 위한 후기 입력체계 고도화, 허위조작후기 대응 강화 등

2 합리적 가격형성 환경 조성

① “바가지 안심가격제도”(자율요금 신고제) 도입 등 통해 적정가격 유도

【 숙박 】

- 비성수기·성수기 등 시기별 요금을 자율적으로 결정, 사전 신고·공개토록 하는 “바가지 안심가격제도”(자율요금 사전신고제) 도입
 - * 제주도는 조례를 통해 렌터카 대여요금을 지방정부로 사전 신고하도록 의무 부과

【 숙박업 등 자율요금 사전신고제 운영방안(안) 】

※ 대상: **숙박업**(공중위생관리법), **농어촌민박업**(도농교류법), **외국인도시민박업·한옥체험업**(관광진흥법)

1. 운영방안

- ① (자율요금 사전신고) 시기별(성수/비성수기/주말/평일/특별행사 등) 숙박요금 상한을 업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사전적으로 신고(예: 연 1회)해야 하는 의무 부과
 - (정부) 제도 마련 + 지방정부가 신고접수(가격결정에는 정부개입 x)
 - (민간) 자율신고요금이 과도한 수준으로 형성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민간 중심 자율적 가이드(예: ①성수기 인상률, ②신고요금/현행요금 비율 등) 운영
 - * 정부-업계(숙박협회 등)간 협약(MOU) 등을 통해 민간 차원의 적정요금 자율형성 유도
- ② (신고요금 공개) 자율요금 신고와 함께 공개 의무 부과 → 업체는 ①숙박예약 플랫폼(OTA) 또는 ②자체 홈페이지, ③접객대 등에 신고요금을 게시
 - 정부와 MOU를 체결하고 자율가이드를 준수하여 자율신고요금을 운영하는 업체에 대해, 플랫폼상 “안심가격업소” 표시 부여
 - 신고접수를 받은 지방정부도 홈페이지에 업체별 신고요금 게시
- ③ (의무위반시 제재) 업체가 ①시기별 요금을 사전신고하지 않거나, ②신고요금 수준을 초과하여 요금징수시 관련 규정에 따라 제재* 부과
 - * (예) (1차위반시)영업정지 5일 (2차)영업정지 10일, (3차)영업정지 20일, (4차)영업장 폐쇄명령

2. 향후계획

- ① 자율요금 사전신고제(신고·공개의무 및 위반시 제재규정 등) 법적근거 마련(공중위생관리법, 관광진흥법, 도농교류법 등 개정 발의, '26.上)
 - 법개정 後 가칭 자율요금 사전신고 운영지침(복지부, 문체부, 농식품부) 마련('26)
- ② 제도 홍보, 협조 등을 위한 중앙숙박협회-플랫폼-중앙정부 MOU 체결('26.上)
 - 법개정 前 지역별로 사전신고제를 자율도입(지방정부-지역숙박협회 등 MOU)하고, 지역상권 활성화 관련 인센티브 우대 추진

※ 여수시, 보령시 등 일부 지방정부는 자율참여를 전제로 한 숙박요금 사전신고제 既 운영중

- 다양한 숙박수요 충족 및 가격안정 유도를 위해 내국인 공유숙박 제도화 추진(관광진흥법 개정)

【 교통 】

- **최대할인을 규제*** 도입 등 **제주도 렌터카 요금신고제**를 개선하고(제주도조례 개정, '26.2), 필요시 **他지역 신고제 도입 검토**
- * 현행제도상 업체가 신고요금 높게 책정, 비수기 대폭할인 / 성수기 할인철회 방식 만연
↳ 예) 신고요금 일 35만원 → 비수기 3.5만원(90% 할인), 성수기 35만원
- ※ **음식점의 경우 원가 변동성 영향, 업체별 가격편차 등 감안하여 요금상한 신고 업종 미포함** → **가격정보 투명성** 중심으로 관리

② 일방적 예약취소, 부당운임 등 행위시 제재·피해구제 규정 등 신설·강화

- **(숙박) 가격인상·재판매 목적의 일방적 예약취소시 제재 규정***을 신설하고, **소비자 피해에 대한 배상 기준**** 마련
- * 가격미표시 및 허위표시와 동일하게 영업정지 처벌(공중위생관리법 등 개정)
- ** 소비자에 대해 계약금 환급 + 배상 규정 신설 (소비자분쟁해결 기준(공정위 고시) 개정)
- **(교통) 부당한 운임 등 바가지요금 징수 행위 적발시 즉시 자격정지** 가능토록 **법적제재 강화**(택시발전법 시행규칙 개정, '26.5)

【 바가지요금 법적제재 강화(안) 】

품목	위반사항(업종, 법령)	위반시 조치사항	
		현행	개선(안)
숙박	정당한 사유없는 일방적 예약 취소 ① 숙박업(공중위생관리법) ② 외국인도시민박·한옥체험업(관광진흥법) ③ 농어촌민박(도농교류법(의무) 및 시행규칙(제재))	제재규정 부재	1차) 영업정지 5일 2차) 영업정지 10일 3차) 영업정지 20일 4차) 영업장 폐쇄명령 (또는 사업등록 취소)
교통	부당한 운임을 받는 행위 (택시업: 택시발전법(의무) 및 시행규칙(제재))	1차) 경고 2차) 자격정지 30일 3차) 자격취소	1차) 자격정지 30일 2차) 자격정지 60일 3차) 자격취소

* 택시업의 경우 현재 자격정지 외 과태료 부과 가능 규정 존재

3 바가지 근절을 위한 제도적 유인구조 강화

1 시장 등을 대상으로 한 정부지원사업 평가·선정시 페널티 강화

○ (지역상권) 바가지로 행정처분 받은 시장·점포의 경우 온누리 상품권·지역사랑 상품권 가맹점 등록취소, 시장지원사업 감점 등 조치

- ▶ (온누리 상품권) ①온누리 상품권 환급행사시 바가지 1회 적발시 경고, 2회 해당시장 행사중단, 3회 해당시장 차회 참여배제 + ②바가지요금으로 행정처분받은 업체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취소 등 제재
- ▶ (지역사랑 상품권) 바가지요금 적발로 영업정지 등 제재처분을 받은 경우 지방정부가 조례에 근거하여 가맹점 등록을 취소하도록 적극 추진
- ▶ (시장지원) 문화관광형시장, 백년시장, 시장경영지원 사업 등 대상 선정시 감점
- ▶ (지역축제) 문화관광축제 및 예비축제 선정시 바가지요금 등 이슈의 경우 감점요인으로 규정

○ (숙박) 바가지요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인정된 숙박업체의 경우 호텔업 등급결정 평가 감점* 및 숙박세일페스타** 참여 제한

* 부당요금, 예약조건 불이행 등 접수시 호텔업 등급결정 평가 감점배점 상향

** 비수도권 지역 대상으로, 여행가는 달(4~5월, 10월)에 연계하여 온라인플랫폼 통해 할인권 제공

2 재정지원, 착한가격업소 등 가격안정 노력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① 물가관리 우수 지방정부에 대해 재정 인센티브* 제공

* '26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시·도 포괄보조금 등 330억원 지급

② “착한가격업소” 강화 등을 통한 바가지근절 인센티브 확대

- ▶ (지원 확대) 착한가격업소 국비지원 예산 확대('25년 예산 31억 → '26년 49억원)
- ▶ (지정 확대) 지방 물가안정관리 평가시 “착한가격업소 지정 확대” 배점 상향 및 “착한 가격업소 신규 지원 발굴 노력” 반영 강화

③ 가격표시 위반 제재, 바가지요금 자율예방 등 우수사례 발굴·확산

4 민·관 공동참여형 통합관리체계 구축

1 현장점검, 신속대응, 정보공유 등 **순주기 범정부 대응체계 강화**

1 “예방·신고대응 → 조치 → 사후관리”의 단계별 범정부 대응체계 구축

- ▶ (신고) 지방정부 통합신고(지역번호+120) + 관광불편 통합신고(1330) 투트랙 운영 및 홍보 강화
- ▶ (조치) 신고접수 등 문제 발생시 소관 시군구 등 지방정부 중심으로 점검·조치
- ▶ (사후관리) 행안부, 문체부 중심으로 신고·조치현황 등 월별 관리 + 관계부처 공유

2 사전예방 강화 위해 행안부·지방정부·관계부처·민간단체 및 국세청 등이 참여하는 바가지요금 합동점검반 특별 현장점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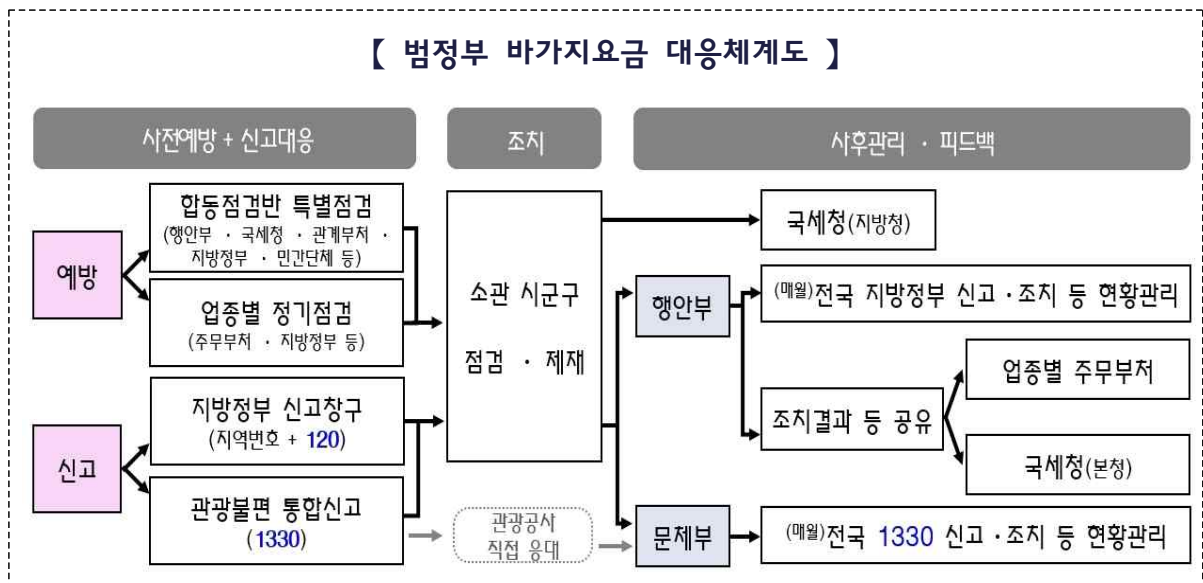
- 업종별 안전관리 정기점검시 가격표시·준수 여부 등도 점검 강화

- ▶ (음식업) 식약처 주관 지방정부 정기점검(매년 3·5·9·12월 집중점검)
- ▶ (숙박업) 지방정부 정기(연1회) 및 수시점검(명절연휴·여름휴가·행사 등 성수기)
- ▶ (농어촌민박업) 농식품부-지방정부 합동 정기점검(매년 동·하절기)

3 관광불편 통합신고(1330) 등 신고접수 업체 리스트 지방정부로 신속 공유 → 필요시 국세청에 통보하여 조세탈루 혐의 등 검토

4 불공정 신고센터 신고를 독려하는 한편*, 업체 간 담합 혐의를 적극 조사하여 담합 행위 등 확인시 신속·엄정 제재

* 담합 사건 신고로 법 위반 인정시 최대 30억원의 신고포상금 지급



② 협회·플랫폼·소비자 등 다양한 민간주체의 자율점검·지도 확대

① (민간협회) 업종별 협회*를 통해 가격표시 준수 관리 및 자율지도 강화, 친절한 서비스 마인드 제고를 위한 캠페인** 등 추진

* (음식업) 한국외식업중앙회 등 (지역상권) 상인연합회 등 (숙박업) 한국숙박업중앙회 등

** 정부-민간협회-소비자가 공동참여하는 "한국관광 공정가격·친절 동참 캠페인" 개최('26.4)

② (플랫폼) 숙박업 예약 플랫폼(OTA)상 자율신고요금 게시, 후기 기능 강화 등을 통해 자정작용 유도

- ▶ 업소별 자율신고요금(성수기/비성수기 등) 게시 및 "안심가격업소"(MOU체결 업소) 표기
- ▶ 가격·서비스 등 정보공개 강화 위한 후기 입력체계 고도화, 허위·조작후기 대응 강화 등
- ▶ 업체의 정당한 사유 없는 일방적 예약취소 등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③ (소비자) 바가지 실태를 불시 점검하는 누리살핌단에 국민을 참여*토록 하고, 주요관광지 중심으로 지역별 점검** 추진

* (기존) 누리살핌단(100명) → (개선) 누리살핌단 + 국민 참여 누리살핌이

** 가격미표시·미준수, 외국인 가격 차별, 과도하게 높은 가격 등 발견시 지방정부 공유

【 참고: 지역별 바가지근절을 위한 지방정부 중점과제 】

1. 합리적 가격형성 환경조성

① 숙박업 자율요금 사전신고제 도입 실효성 확보를 위해 지역숙박협회 - 지방정부 간 MOU 체결('26.上)

* 자율요금 사전신고제 홍보 및 법개정 前 자율적·자체적인 사전신고제 추진(여수, 보령 등 사례)

② 지역축제 참여 음식점 등의 적정가격 자율관리 강화*

* (예) 지방정부가 참여업체 선발시 적정가격 판매의무 포함 + 품질관리 모니터링

③ 상인회 정관 등 통한 경고 등 자체 제재체계 구축 추진

④ 대규모 행사 예정시 지방공공시설 등 개방*을 통해 가격안정 유도

* (예) 지역대학 부대시설, 청소년 수련시설 등 임시개방 → 검색·예약이 용이하도록 민간 플랫폼 등과 연계 추진(부산시 사례)

⑤ 착한가격 업소 등 바가지요금 근절 위한 인센티브 강화

* 숙박업 착한가격업소는 부산 5개, 서울 2개에 불과 → 홍보강화 등 지정 확대 유도

2. 가격(품질) 투명성 제고

① 노점실명제 도입 등 노점상의 가격표시 의무 확대 추진

② 숙박·음식점 등 지방정부 주관 안전관리 정기점검시 안전·위생 상태 外 가격표시·준수 여부 등도 지도·점검 강화

※ 관계부처 합동 지역별 설명회 추진 예정('26.上)

IV. 향후 추진계획

정책 과제	추진시기	부처·기관
-------	------	-------

1. 가격(품질) 투명성 제고

▶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	'26.5월	문체부
▶ 도농교류법 개정	'26.下	농식품부
▶ 대규모 이벤트 발생시 숙박요금 신속 모니터링 및 공개	상시	공정위
▶ 노점실명제 우수사례 발굴·배포	'26.1분기	중기부
▶ 문화관광형시장 선정 평가지표로 가격표시 항목 신설	'26.下	중기부
▶ 문화관광형시장 다국어 메뉴시스템 제작 지원	'26.下	중기부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	'26.4월	식약처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26.4월	복지부

2. 합리적 가격형성 환경 조성

▶ 자율요금 사전신고제 도입 추진	'26.上	재경복지문체농식품행안부
① 숙박협회·플랫폼·정부 MOU 체결	'26.上	재경복지문체농식품행안부
② 공중위생관리법 개정	'26.下	복지부
③ 관광진흥법 개정	'26.下	문체부
④ 도농교류법 개정	'26.下	농식품부
⑤ 자율요금 사전신고 운영지침 마련	'26.下	복지·문체·농식품부
▶ 제주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개정	'26.2월	국토부·제주도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	'26.下	공정위
▶ 택시발전법 시행규칙 개정	'26.5월	국토부

3. 바가지 근절을 위한 제도적 유인구조 강화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	'26.下	중기부
▶ 정부지원사업 바가지업체 페널티 위한 지침개정 및 기준마련	'26.上	문체·농식품부
▶ 호텔업 등급 평가지침 개정	'26.上	문체부

4. 민·관 공동참여형 통합 관리체계 구축

▶ 바가지요금 합동점검반 특별 현장점검	상시	행안부·국세청 등
▶ 안전관리 정기점검시 가격표시·준수 등 점검 강화	분기별	식약처
▶ 한국관광 공정가격·친절 캠페인 개최	반기별	농식품부
▶ 전국민 누리살핌이 신설	'26.4월	문체부
	'26.4월	문체부

➔ 향후 관광 외 기타 바가지요금 관련 분야(집합건물 관리비* 등)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제도개선방안 마련·발표 추진

* 부당이득 수취 등 집합건물 관리비 이슈 관련, 관리비 징수현황 실태조사 ('25.11~'26.1)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방안 마련 예정('26.上, 법무부)